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강승수 의원 외 6명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세부 규정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사업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